



“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”

(우)04373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****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백영기[6574] 보험연구팀장 김선우[6576] 팀원 유슬기[6593]/ E-mail : kmarbrvs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1-8809호

시행일자 2025. 11. 19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 발령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예규 제152호(2025. 11. 18.)

2. 상기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「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」 을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「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 심의 시 검토자료로 안전성 ·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 · 국외의 연구논문 자료를 추가 (안 제5조제1항제2호)
- 나. 전문위원회도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도록 추가 (안 제6조)
- 다. 의견진술신청서 제출 기한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도별로 구분하고, 그 기한을 운용 중인 절차에 맞게 설정 (안 제6조제2항)
- 라. 의견진술 기회의 통지 기간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도별로 구분하고, 그 기간을 운용 중인 절차에 맞게 설정 (안 제6조제3항)
- 마.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규정 (안 제6조의3)

첨부

- 1) 「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+운영에+관한+규정」 +일부개정_발령.HWPX
- 2) 「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+운영에+관한+규정」 +일부개정_발령.PDF. 끝.

대한의사협회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수신처 : 각 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, 각 전문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 개원의 협의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